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하이테크기업 직원교육경비 세전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**  재세[2015]63호  각 성·자치구·직할시·계획단열시 재정청(국), 국가세무국, 지방세무국, 신장(新疆)생산건설병단 재무국 : 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하이테크기업 직원교육경비 세전공제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.  1. 하이테크기업이 발생한 직원교육경비 지출은 임금·급여 총액의 8%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업소득세 과세대상소득 산정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며; 초과 부분은 다음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.  2. 이 통지에서 하이테크기업이라 함은 중국 경내에 등록되었고 장부근거징수제를 적용받으며 인증을 통과한 하이테크기업을 지칭한다.  3. 이 통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.  재정부  국가세무총국  2015년 6월 9일 |  | **关于高新技术企业职工教育经费**  **税前扣除政策的通知**  财税〔2015〕63号  各省、自治区、直辖市、计划单列市财政厅（局）、国家税务局、地方税务局，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：  　　经国务院批准，现就高新技术企业职工教育经费税前扣除政策通知如下：  　　一、高新技术企业发生的职工教育经费支出，不超过工资薪金总额8%的部分，准予在计算企业所得税应纳税所得额时扣除；超过部分，准予在以后纳税年度结转扣除。  　　二、本通知所称高新技术企业，是指注册在中国境内、实行查账征收、经认定的高新技术企业。  　　三、本通知自2015年1月1日起执行。  财政部  国家税务总局  2015年6月9日 |